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진 학 성]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1. 8. 24.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1. 8. 24.

2. 예산안 규모

가. 총괄 (예산서안 p9)

(단위 : 천원)

회계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
계	775,912,953	688,899,427	87,013,526	12.63
일반회계	701,166,348	619,857,581	81,308,767	13.12
특별회계	74,746,605	69,041,846	5,704,759	8.26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870억 1,352만 6천원이 증액(12.63%)된 7,759억 1,295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음
 - 일반회계는 7,011억 6,634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13억 876만 7천원이 증액(13.12%) 되었음
 - ※ 수정예산으로 코로나 상생지원금 143억 1,049만 7천원 증액과 거창한마당축제 행사비 14억 1,560만원을 감액함
 - 특별회계는 747억 4,660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7억 475만 9

천원이 증액(8.26%) 되었음

나. 세입예산(일반+기타특별+공기업특별)(예산서 p10)

(단위 : 천원)

구 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기 정 예 산 액	비교증감		
			증감액	증감률(%)	
합 계	775,912,953	688,899,427	87,013,526	12.63	
일반회계	소 계	701,166,348	619,857,581	81,308,767	13.12
	지방세수입	33,413,029	33,413,029	0	0.00
	세외수입	12,037,741	12,037,741	0	0.00
	지방교부세	277,517,204	241,295,000	36,222,204	15.01
	조정교부금등	25,673,831	20,566,677	5,107,154	24.83
	보조금	231,976,658	210,433,614	21,543,044	10.24
	보존수입등내부거래	120,547,885	102,111,520	18,436,365	18.06
공기업특별회계	45,913,517	41,640,756	4,272,761	10.26	
기타특별회계	28,833,088	27,401,090	1,431,998	5.23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70억 1,352만 6천원이 증액(12.63%)된 7,759억 1,295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음.

-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011억 6,634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13억 876만 7천원이 증액(13.12%) 되었고,
- ▶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59억 1,351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2억 7,276만 1천원이 증액(10.26%) 되었으며,
- ▶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88억 3,308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억 3,199만 8천원이 증액(5.23%) 되었음.

다. 세출예산(일반+특별)

(단위 : 천원)

구 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기 정 예 산 액	비교증감		
			증감액	증감률(%)	
합 계	775,912,953	688,899,427	87,013,526	12.63	
일반회계	소 계	701,166,348	619,857,581	81,308,767	13.12
	의회운영위원회	1,023,486	1,023,486	0	0
	총무위원회	355,187,890	321,424,084	33,763,806	10.50
	산업건설위원회	344,954,972	297,410,011	47,544,961	15.98
공기업특별회계	45,913,517	41,640,756	4,272,761	10.26	
기타특별회계	28,833,088	27,401,090	1,431,998	5.23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870억 1,352만 6천원이 증액(12.63%)된 7,759억 1,295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음.

○ 회계·소관별로 살펴보면

- ▶ 일반회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10억 2,348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고,
- ▶ 일반회계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3,551억 8,78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7억 6,380만 6천원이 증액(10.50%)되었으며,
- ▶ 일반회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3,449억 5,497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75억 4,496만 1천원이 증액(15.98%)되었음.
- ▶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59억 1,351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2억 7,276만 1천원이 증액(10.26%) 되었으며,
- ▶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88억 3,308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억 3,199만 8천원이 증액(5.23%) 되었음.

3. 예비심사 결과

가. 의회운영위원회

- 세입·세출예산안 : 해당 없음
- 세입·세출예산안 변동 조서 : 해당 없음
- 세입·세출예산안 조건부 승인 조서 : 해당 없음

나. 총무위원회

- 세입예산안
 - 일반회계 :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
 - 특별회계 :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
- 세출예산안
 - 일반회계 : 3건에 165,000천원을 감액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
 - 특별회계 :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
- 세입예산안 변동 조서 : 해당 없음
- 세출예산안 변동 조서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부기명)	요구액	감액	조정액	사유	비고
		정책	단위	세부						
계		3건				175,000	▲165,000	10,000		
1	문화 관광과	문화예술 진흥	문화원 운영	문화원 사업활동 및 운영	민간경상사업 보조 (지역문화 활성화지원사업 ◦향토사료 발간)	15,000	▲5,000	10,000	과다책정	p171
2	체육시설 사업소	체육진흥	체육기반 조성	체육시설 관리	시설비 (단노을 생활문화센터 족구장 설치 사업)	140,000	▲140,000	0	불요불급	p241
3	체육시설 사업소	체육진흥	체육기반 조성	체육시설 관리	시설비 (고체파크 골프장 설치 실시설계)	20,000	▲20,000	0	불요불급	p241

- 세입예산안 조건부 승인 조서 : 해당 없음
- 세출예산안 조건부 승인 조서 : 해당 없음

다. 산업건설위원회

○ 세입예산안

- 일반회계 :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
- 특별회계 :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

○ 세출예산안

- 일반회계 : 5건에 763,000천원을 감액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
- 특별회계 :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

○ 세입예산안 변동 조서

- 일반회계 : 해당없음
- 특별회계 : 해당없음

○ 세출예산안 변동 조서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부기명)	요구액	증감액	조정액	사유	비고
		정책	단위	세부						
계		5건				763,000	▲763,000	0		
1	경제교통과	대중교통시설	교통안전확충시설	농어촌버스교통카드시스템도입지원	운수업계보조금(농어촌버스교통카드단말기교체지원)	140,000	▲140,000	0	불요불급	p286
2	산림과	항노화산업육성	항노화산업육성및지원	항노화산업기반조성	시설비(감악산 및 건흥산·이흥산 권역마스터플랜)	200,000	▲200,000	0	불요불급	p308
3	환경과	자연환경	생태환경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설치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설치사업)	173,000	▲173,000	0	불요불급	p316
4	농업축산과	농촌복지증진	축산업육성	한우스마트경매시장구축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한우스마트경매시장구축사업)	150,000	▲150,000	0	불요불급	p352
5	행복농촌과	행복농촌	식품산업육성	농촌융복합산업미중몰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00,000	▲100,000	0	불요불급	p368

○ 세입예산안 조건부 승인 조서 : 해당 없음

○ 세출예산안 조건부 승인 조서 : 해당 없음

4. 주문사항 : 해당없음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1. 8. 24.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1. 8. 24.

2. 2021년도 기금 변경(안)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 재산과 기금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나. 주요내용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 : 천원)

‘20년도말 조성액①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			‘21년도말 조성액 ④=③+①	비고
	수입 ②	지출 ③	증감 ④=②-③		
152,560,000	23,583,598	60,000,000	△36,416,402	116,143,598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 천원)

‘21년도말 조성액 ①	융자금 미회수채권 ②	지역개발 채권 미상환 잔액③	총 조성규모 ④=①+②-③
116,143,598	-	-	116,143,598

○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현황

- 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 : 천원)

‘20년도말 조성액①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			‘21년도말 조성액 ②=③+①	비고
	수입 ②	지출 ③	증감 ④=②-③		
326,911	57,360	46,600	10,760	337,671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 천원)

‘21년도말 조성액①	융자금 미회수채권 ②	지역개발 채권 미상환 잔액③	총 조성규모 ④=①+②-③
337,671	-	-	337,671

3. 기금운용 계획안 규모

(단위 : 천원)

기금명	2020년말 조성액 ①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		2021년도말 조성액 ④=①+②-③	증감 ⑤=④-①
		수입 ②	지출 ③		
합계	152,886,911	23,640,958	60,046,600	116,481,269	△36,405,642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152,560,000	23,583,598	60,000,000	116,143,598	△36,416,402
옥외광고 발전기금	326,911	57,360	46,600	337,671	10,760

4. 검토의견

▣ 통합재정안정화기금<기획예산담당관>[p13]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및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등 지방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 재원의 구성은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정안정화계정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은 자금 등으로 조성되는 통합계정으로 이루어지며
-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여유재원 전입금 100억원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고자 하며, 농업발전자금특별회계 예수금 781,888천원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수금 81,230천원을 통합계정으로 적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 연도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군 재정의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통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 옥외광고발전기금 <도시건축과>[p21]

-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거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옥외광고물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2010. 3. 29. 조례(조례 제1967호)로 제정되었음
- 기금조성 현황을 보면 2020년도말 326,911천원 대비 10,760천원이 증액된 2021년도말 기금잔액은 337,671천원임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수입계획은 당초 3억 5,027만 1천원에서 국고보조금 3,400만원이 증가된 3억 8,427만 1천원이며, 지출계획은 당초 3억 5,027만 1천원에서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 1,800만원, 지정게시대 보급사업 1,000만원,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 1,000만원이 증가되어 3억 8,427만 1천원임
- 옥외광고발전기금은 법률 및 거창군 조례에 의하여 조성·운영 되어야 하며, 불법광고물 예방 홍보물 구입,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지원 및 간담회, 옥외광고, 불법무연고 간판철거, 안전점검 지원사업 등 기금운영 목적에 맞게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5. 예비 심사결과

- **총무위원회** :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